##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84 발의연월일: 2024. 12. 11.

발 의 자:조 국·복기왕·이학영

강경숙 • 신장식 • 김준형

김선민 • 이해민 • 서왕진

박은정 · 김재원 · 차규근

정춘생・황운하 의위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7조). 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엄으로 국회에 대하여 그 어떤 특별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로 하여금 계엄해제권을 부여하여 계엄에 대한 규범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국헌

질서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자행한바, 국회의 계엄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엄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계엄법에 명시적으로 계엄사령관의 관장사무에서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제7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으로 계엄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점(제13조 단서 신설),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명문화(제9조제5항 신설)하고자 함.

또한, 비상계엄을 수행하는 계엄군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규범적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작전을 수행하여 내란죄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도록 각군의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계엄에 대한 규범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제2조의2신설).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2(위관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계엄교육) ① 국방부는 각군 위 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연 1회 이상 계엄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위 계엄법령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비상계엄 및 경비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를 위반한 자가 국회 내에 있어 체포를 위해 국회로 들어올 경우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국회법 제12조 및 13조에 따른다.

제1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조의2(위관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계엄교육) ① 국방부는
	각군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연 1회 이상 계엄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 계엄법령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u>정한다.</u>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비상계엄 및 경비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를 위반한 자가 국회
	내에 있어 체포를 위해 국회로
	들어올 경우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국회
	법 제12조 및 13조에 따른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	
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다만,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